

KS 미인증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갱폼 수직보호망 나비기준 관련 잘못 공유되는 사례

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

6. 성능기준 제품 사용 (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등)

적용시점: 2018년 12월 29일 이후 설치분부터

주요 내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등 '산업표준화법'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 제품 사용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 (낙하물에 의한 위협의 방지) - 추락방호망 '산업표준화법'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기준 제품 사용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3항 (추락의 방지) · (방호정지 안전인증) 별표 23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(제36조 관련 삭제) (2018-53고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CS(안전인증)과 KS(산업표준화법) 이중 인증에 따른 부담해소, KS기준에 적합한 자재만 사용 (KS F 8081 수직보호망, KS F 8082 추락방호망, KS F 8083 낙하물방지망) ·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

① 안전망은 KS 제품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KS 시험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됨

② 갱폼에 설치된 수직망은 현재 폭1.85m가 아닌 과거처럼 일체식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함

7. 사고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와 관련

적용시점: 공포 후 1년

주요 내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부분 작업 중지)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함 · (전면 작업 중지)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화함 	

☞ 화재 폭발 붕괴 사고, 타워크레인 사고 등은 전면 또는 부분 작업 중지 대상
일반적인 중대재해의 경우 작업 중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

□ 잘못 된 사례 ① 안전망은 KS제품만 가능하며, 현장에서 KS시험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됨

○ 올바른 설명 ☞ KS인증제품이 아니더라도, KOLAS시험성적서로 KS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사용가능 함

□ 잘못 된 사례 ② 갱폼 수직망은 현재 폭1.85m 이내가 아닌, 과거 처럼 '일체식(연폭)' 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함

○ 올바른 설명 ☞ 갱폼 수직보호망에 대한 나비 등 치수제한은 없으나 접합부(연폭)*가 있다면, 접합부(연폭)의 인장강도가 KS성능기준(방망의 인장강도)에 적합한지 KOLAS 시험성적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.

※ 접합부(연폭): 방망사를 연결한 부분으로, 봉재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임

※ 기존 KS인증제품의 경우에도 접합부(연폭) 인장강도 확인이 필요함